

(가칭)내삼미동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

※ 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조합원 모집 계약에 응하시기 바리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조합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지역주택조합의 최초 조합원 모집공고일은 2017년 5월 10일(수)요일입니다.
- 조합원 모집의 주체는 (가칭)내삼미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18-3번지입니다.
- 조합아파트 건설대지 위치 :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439-2번지 일원 (총 95 필지)
- 본 주택의 건립주체는 '오산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보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통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으로 추진되며,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후 조합설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임을 인지하 시고,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인허가 일정이 타 사업과 비교 시 다소 소요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아파트 건설대지 면적 : 약 99,126㎡ (변경가능)
- 조합원 모집세대수 : 총 1,560세대(예정) 중, 1차 조합원 800세대, 2차 조합원 450세대 모집사업계획 승인, 설계비용 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조합원 모집기간 : 2017년 5월 10일(수)부터 ~ 조합원 모집 완료시까지
- 조합 신청자격
 - 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①주택, 제2조에 의거하여 오산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확대 적용됩니다.
 - 세대주(오산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로서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또는 전월면적 85㎡이하 1세대1차 소유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 2번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 신청 시 구비서류, 일시 장소의 경우 모집공고 2번의 조합원 신청 및 타당성 추정조사 참조
- 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모집공고 2번의 사업계획서 및 조합원 분담금액 참조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예정)
 - 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작은 도서관,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별도, 병행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지하주차장, 경비실, 어린이놀이터 등)
- 동·호수 배정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모집공고 3번 참조
- 당첨자 발표의 일시 및 장소 - 모집공고 4번 참조
- 계약일 및 계약장소, 계약방법 - 모집공고 4번, 5번 참조
-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모집공고 6번 참조
- 가타 예정일 (조합설립인가 신청예정일, 사업계획승인 신청예정일, 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추후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모집공고 9번 참조
- 가타 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 - 모집공고 9번 참조
- 조합원 가입 신청 전에 본 공고상의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사항에 대해 조합원 본인이 직접 확인후 가입하시고, 가입 후 조합원 부적격당첨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및 조합원 분담금액

-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439-2번지 일원 (총 95 필지)
- 대지면적 : 약 99,126㎡ (예정, 변경가능)
- 연 면 적 : 약 193,852.94㎡ (공동주택 : 191,452.94㎡, 근린생활시설 : 2,400㎡) (예정)
- 공급규모 : 아파트(1~4층 ~ 지상 25층 16 개동 총 1,560여 세대, 부대복리시설 (예정)
- 주택형별 면적표 및 모집세대수 (예정)

주택형	세대별 주택면적(㎡)										공급세대 (예정)	비고
	공급 면적		가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포함)		계약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	계									

※ 상기면적 및 공급세대수는 인·허가 과정 중 변경될 수 있음

※ 조합원 분담금내역 및 납부일정 (예정)

- 1차 조합원 모집 세대 및 분담금 : 800세대

단원·현원

신청형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이나 다른 세대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 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2 명에 한하여 주거전문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2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별 제2조 제호 가목의 구분에 따른 자원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 ②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차별·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정·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재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의 확인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조합원 신청 및 추정방법

■ 신청금액, 일정 및 신청방법

구분	주택형 신청금액	신청기간	신청금 계좌	신청 방법	입금일자 표시내용
신청 금액	300만원	2017년 5월 10일(수) ~ 2017년 5월 24일(수)	추후 홈페이지게재 및 유선통보 예정	계좌 이체	*본인(이)름과 주민등록번호(입)자리에 신청자(명)이 포함된 1970년초 - 총일동75

※ 당 지역주택조합의 자금관리실태의 지정 신청계좌로 신청자 본인명의로 입금해야만 조합원 신청을 인정함.

- ※ 주택별별 신청금액은 지정 신청금액만 인정하며 인 12만 인정함
- ※ 상기 신청금 계좌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무효를 확인으로 함
- ※ 상기 신청금액 당첨에 따른 개인 시 1차 계약금으로 할산됨
- ※ 계약세대 초과분 및 과오납분에 대한 환불은 2017년 5월 31일까지 구비서류 첨부 접수, 6월중 일괄 지급 예정임
- ※ 환불 신청 시 환불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입금증 등이 필요하며, 구비서류가 없을 경우 환불되지 않음.
- ※ 계약예정지는 개별 사면 통지하지 않음. (전화문의로는 착오로 인해 응답하지 않음)

■ 추정일시, 방법

구분	추정일시(예정)	동·호수 추정 방법	추정 및 당첨 동·호수 게시장소
추정방법	2017년 5월 25일 (목) 09:00	공개추첨	주택 홍보관

※ 당첨자 추첨시 청약자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 되고 미 참석시 동·호수 배정에서 제외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추첨시 예비당첨자 없이 계약기간 종료 후 선순위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4. 조합원 계약일정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예정)	계약 장소
계약	2017년 5월 25일(목)부터 10:00 ~ 17:30	주택 홍보관

※ 당첨자는 당첨된 주택형별 등을 확인 후 계약금 및 입주대행비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필수 구비서류를 준비하 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배정 없이 인의로 추가조합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분담금 전부 및 입주대행비를 납입한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일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조합원 신청금, 분담금, 입주대행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좌는 추후 개설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게재(dongtanparkperion.co.kr)및 유선통보 / 문의 시 알려드립니다.

※ 지정계좌 및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추진위조합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서 내용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신청하시기 바라며, 무통장 입금자료를 부적격자로 평면된 지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지는 없습니다.

5. 계약서류

■ 조합원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 시	1. 주민등록등본 2통(세대원 전부 주민등록번호 기재)
	2. 주민등록초본 2통(인 주소지 및 세대주 포함)
	3. 인감증명서 5통
	4. 가족관계증명서 2통
	5. 신분증 사본
	6. 청약서
	7. 인감도장
	8. 혼인관계증명서 2통(이혼 단독 세대주인 경우)
	9. 배우자의 등본 2통(부부 분리세대인 경우)
	10. 주택동기부등본 2통(주택 소유자인 경우)
대리인 계약 시	1. 위임장
	2. 위임자 인감증명서 2통
	3. 대리인 신분증 사본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함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 가입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철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 할 예정입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는 '내삼미동지역주택조합 가입용'으로 표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3개월이 초과된 경우나 신청자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추진위(조합) 요청 시 추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세대구성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도장 날인 시 최초 계약서와 동일한 인감도장으로 날인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서 및 동의서 등에 필요한 서류이고, 추후 조합설립인가 등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필요시점에 개별 통보 할 예정입니다.

6.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국토교통부의 조합원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조합원 가입이 불가하며, 부적격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조합기간이 가능합니다.
- 조합원 가입 후 임의탈퇴는 불가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경우 조합장에 통보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탈퇴할 수 있습니다.
- 탈퇴 서류의 결정서류, 무방한 방법으로 가입하거나 조합원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으나 기간 장만에 따른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불시기)에 대하여는 조합규약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반드시 조합주택의 입주가능 일까지 조합원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가 부적격자로 평면되어 자격을 상실한 경우 1개월 내에 소명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해지 처리되며, 이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시점 이전에 부적격자로 평면된 경우 일종의 소명기간을 부여한 후 조합원추가모집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조합설립인가 신청시점 이후에 부적격자로 평면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1개월 내에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이 되지 아니할 경우 해당세대는 일반분양으로 대체됩니다.)
- 토지사용승락서 80%장구 미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조합설립인가 미승인시 납부한 분담금 및 입주대행비 전액은 반환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조합규약에 의거하여 비용을 공제한 후 반환됩니다.)

7. 기타 안내

■ 계약자 동거자친인애

- 본 아파트는 1차조합원모집에 한하여 중도금모집자가 적용될 예정임 (중도금 7회분 중 자납분 10%를 제외한 6회분은 금리 4.5%한도 내에서 무이자라 적용 될 예정이며, 입주 시 잔금과 함께 이차 증감분에 대한 정산)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홍보관내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총회회결 또는 이사회의결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할 예정이나, 관련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정책추진과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입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대금 등 재변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계약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담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될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대출은행과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 협약조항에 따라 지정된 일자에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취소 등의 사유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 조합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은 사업주체(당 지역주택조합) 지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여사항이 발생하여 중도금대출 중단 등 대출 금융기관의 등 유에 따라 분담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일정

- 조합설립인가 신청은 2016년 5월경 신청 예정이며, 조합원 모집일인 토지주 동의를, 도시개발사업 추진일정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승인 신청은 조합설립인가 후(2017년 4월경) 신청 예정이며,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도시개발 사업 인허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착공은 사업계획 승인 후 3개월 내 예정이며, 길러져 선정기간 및 시공시 협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아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조합설립인가, 토지 매입,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 착공, 입주 등 사업전반에 대해 처음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일반분양 사업과는 달리 상가일정 등을 특화할 수 없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정책변경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인·허가 진행과정등에 의해 변경 되는 지연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어 조합원 기금을 하시고, 사업일정 지연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지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조합원(입주자) 사전 입주점검
 - 조합원(입주자) 사전현은 확인제도 : 도청공사 : 도매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기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집 개시일전 입주 계약(약)~2개월전에 입주자 사전점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인주 점검행시 일자는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1년 9월경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실업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업주 지장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산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납 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된 단, 기 납입한 산납할인금액은 실업주 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에는 공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총 천치천만,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하지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별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8. 유의사항

■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조합규약 일부)

- 조합원의 권리
 - 사업계획으로 정한 조합주택의 공급추진권
 - 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
 - 입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선출권은 조합원에 한하며 조합원 이외의 자는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조합원의 의무
 - 조합원 분담금(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공비, 각종 용역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 하는 일체의 금액)의 납부 및 조합 가입계약서, 조합총회 등에서 정한 금액 등의 납부의무
 - 관계법령 및 규약,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이무- 조합의 의결권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원이 유고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중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고 그 권한을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이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에 관한 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과 과세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대동 등 처분사실은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상 등기수량(일대등기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처입일)기준으로 주택 공유비율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3조)
 -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자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간혹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거나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간혹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주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임대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속사로 사용하여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층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때(기)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체층 중 일부는 1층 ~ 2층이 필로티로 구성됩니다. (예정)
 - 주택용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문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문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휴먼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토에 대한 금액이 상기 조합원분담금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상기 세대별 대지면적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정확장측량결과 또는 공부장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기 세대별 대지면적은 지구단위계획상의 공동주택부토 한정하여 배분되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근린공원, 도로 등)은 추후 기부채납 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세째자리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면적은 인복차수로 상향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차수로 상향함. 또한,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세째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하 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는 상기 모집대상 및 모집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총수는 건립총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필로티가 있는 층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 호수를 적용하여 상향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 호수를 고려하여 모집가를 상향하였습니다.
- 진급은 사용금사일 이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금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 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장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업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조항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이후 총회회의 또는 이사회의결로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 혹은 기타 금융권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대출 미신청자(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경우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재입금을 미려하여 납부하여) 합니다.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일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 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적용합니다.

- 진급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최초개시일을 기준으로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주택용] 또는 [현원]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않고 조합원 모집공고(주택형명)으로 기재하여 불이익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으로 주택용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문면적+주거공용면적)기준에서 주거전문면적을 표기하도록 변경 되었으며, 당 사업의 주체는 주택용 오키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채결 후 해약하는 경우 조합규약에 의거하여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 정리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의 때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시공사와의 협의에 따라 도로, 주차,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허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에 따라 단지 주변도로의 교통체계 및 통선 등이 계획과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현모시설 유무, 도로, 소음, 악취, 조망, 일조, 전압인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리며, 본 아파트 배기구 및 동·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 으로 환경영향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리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조건 도로여건, 인근 건물신축계획 등 주변 개발 현황,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리며, 미확인이 따른 불이익은 개인에 책임으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기타 주민공동시설 등은 입주 후 입주인이 자체적으로 운영 및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 단지 도로는 향후 주변 도시개발계획 등 사업주체, 지자체 및 기타 관련기관의 추진과정 중 변경 지원,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확성수용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자는 구역장청 변경 시 향후 세대가 증가할 이 예상되므로 그로 인한 추가거나 또는 감소를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다면도, 단지 배차 특성상 일부 세대에서는 시리러져 진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사진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 세대 당 공공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장리, 소수점이하 단수처리 등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토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이하 반올림등 및 로인 인한 지분분할은 정산시에서 제외함)
- 홍보관에 시공된 제품 및 적용된 마감재는 자체품질, 품종, 생산종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시공사의 시공여건, 협의 또는 신제품의 개시,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급치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홍보관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품은, 커튼콜, 스피클렛 등 각종 인센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는 각종 평가 심의 인·허가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관은 조합원 모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사업주체(조합)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류 내 설치된 마감재 등을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공 전·후, 기공 또는 임의 단계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채비, 공동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승인승인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사항은 요청당사자가 장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에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계획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주택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이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를 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별 및 사업계획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9. 사업주체 및 자금관리사

구분	사업주체	자금관리사(예정)
상 호	가칭(내삼미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국제자산신탁주)
주 소	경기도 화성시 상성로421 7-9 (석우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8, 20층 (삼성동)
등록번호	865 - 80 - 00694	11011 - 2003236

■ 시공사 : 협이중

■ 홍보관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상성로74길 7-9 (석우동)

^[1] 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조합원 모집 계약에 응하시기 바리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조합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